

고용노동부 차관, 폭우·폭염 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 최우선 당부

-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고용노동부 차관, 외국인 다수 제조 현장 점검하고 안전수칙 모국어 교육 지도
- 이번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 당부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17일(목) 10:00 시화공단(경기도 시흥)에 있는 염색가공업체(제조업) (주)창일텍스타일을 방문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도 함께 당부했다.

* ❶ 시원한 물 ❷ 냉방장치 ❸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❹ 보냉장구 지급 ❺ 119신고

이날 점검은 오늘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이주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챙기기 위한 것이다.

(주)창일텍스타일은 고온으로 원단을 다림질해야 하는 공정 등으로 인해 작업장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권창준 차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다음 주부터 다시 폭염이 예상되므로 냉방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2시간마다 20분 이상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많이 일하고 있는 만큼 모국어로 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 달라.”라고 지도했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올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이동식에어컨을 설치·가동하고 있으며, 작업장 온도가 높은 일부 공정은 1시간마다 10분 휴식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창준 차관은 “어제 저녁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 오산 지역에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번주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붕괴·감전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후 노동자를 대피시키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위험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라고 말했다.

참고1 : 현장점검 개요

참고2 : 온열질환 예방지침

참고3 :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조치사항

참고4 :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자율점검표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팀 장	신욱균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박현건 (044-202-8891) 원치욱 (044-202-8893) 한진우 (044-202-8895)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화학사고예방과	책임자	과 장	손성길 (044-202-8965)
		담당자	사무관 전문위원	이재희 (044-202-8968) 김상범 (044-202-8972)



□ 개요

○ (일시) '25. 7. 17.(목) 10:00~11:00

○ (장소) (주)창일텍스타일

(업종: 염색가공업(제조업), 근로자 54명<외국인 20명>)

*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32(정왕동, 시화공단 1바 208호)

○ 참석자

- (노동부) 차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장

- (안전공단) 산업보건실장

- (사업장) (주)창일텍스타일 대표, 상무

□ 주요 내용

○ 염색가공업(제조업) 현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점검

* ❶ 시원한 물 ❷ 냉방장치 ❸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❹ 보냉장구 지급 ❺ 119신고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붕괴·감전 등 피해 예방 당부

<현장 온열질환 예방활동 : 이동식에어컨 설치·가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5.7.17.(목) 시행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 5대 기본수칙 준수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체감온도 계산기

5대 기본수칙 준수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바람·그늘	☑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휴식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작업중지

- ☑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온열질환 민감군

- ✔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 신규배치자 등에 대한 폭염작업 시간 단계적 증가
- ✔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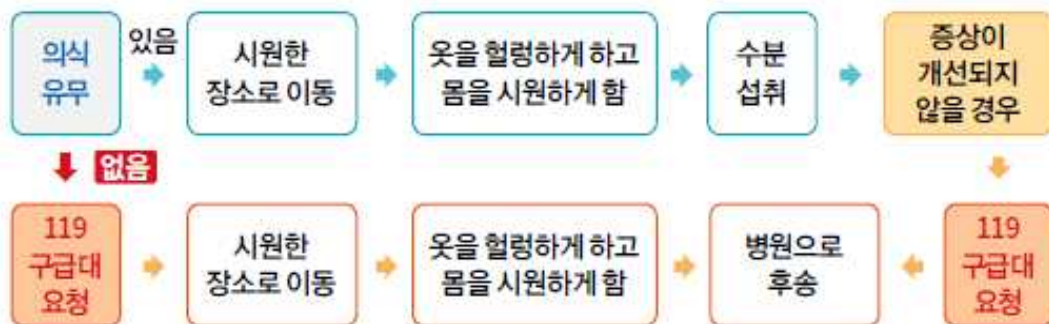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질병관리청)

▶ 온열질환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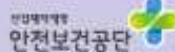
-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 온열질환 조치 요령

-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 ✔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인도네시아



Tindakan Pencegahan Penyakit Terkait Panas yang Disebabkan oleh Panas Ekstrem



Mulai 1 Juni, pemberi kerja harus mengambil tindakan pencegahan terhadap penyakit yang berhubungan dengan panas sesuai dengan Pasal 39 Undang-Undang Keselamatan & Kesehatan Kerja ketika pekerja bekerja di tempat kerja yang memiliki suhu 31°C atau lebih tinggi.

*Informasi terperinci dapat dilihat di "Aplikasi Keselamatan dan Kesehatan Penyelamatan Diri dari Krisis."

Tindakan Pencegahan Terhadap Penyakit Terkait Panas

- Gunakan termometer dan higrometer untuk mengukur suhu yang sesuai dan catat tindakan yang diambil
- Informasikan kepada pekerja tentang gejala penyakit terkait panas dan tindakan darurat
- Tiga aturan dasar yang harus diikuti



Tiga aturan dasar yang harus diikuti

Air	Air dingin dan bersih harus disediakan dalam jumlah yang cukup
Angin dan Naungan	- Pasang dan operasikan AC dan kipas angin industri di tempat kerja - Sesuaikan jam kerja untuk meminimalkan paparan panas yang ekstrem - Area bernaung (tempat istirahat) harus disediakan di luar lokasi kerja
Istirahat	- Istirahat yang tepat diperlukan ketika suhu 31°C atau lebih tinggi - Pekerja harus beristirahat minimal 20 menit setiap 2 jam ketika suhu 33 °C atau lebih tinggi

Tindakan yang Harus Dilakukan Jika Diduga Terkena Penyakit Panas



2025-산업보건실-000



방글라데시



প্রচণ্ড তাপের কারণে সৃষ্ট তাপসম্পর্কিত অসুস্থতার জন্য প্রতিবোধমূলক পদক্ষেপসমূহ



1 জুন থেকে, পেশাগত নিরাপত্তা ও স্বাস্থ্য সংক্রান্ত আইনের ধারা 39 অনুযায়ী, অনুভবযোগ্য তাপমাত্রা 31 ডিগ্রি সেলসিয়াস বা তার চেয়ে বেশি এমন কর্মস্থলে কর্মীদের কাজ করার সময় নিয়োগকর্তাদের অবশ্যই তাপ সম্পর্কিত অসুস্থতার বিরুদ্ধে প্রতিরোধমূলক পদক্ষেপসমূহ গ্রহণ করতে হবে।

* "ক্রাইসিস এসকেস সেন্টার" ও "স্বাস্থ্য জ্ঞান" বিস্তারিত তথ্য চেক করা যাবে।

তাপ সম্পর্কিত অসুস্থতার বিরুদ্ধে প্রতিবোধমূলক পদক্ষেপসমূহ

- অনুভবযোগ্য তাপমাত্রা পরিমাপ করতে একটি থার্মোমিটার ও হাইগ্রোমিটার ব্যবহার করুন এবং স্থায়ী পদক্ষেপগুলো রেকর্ড করুন
- তাপ সম্পর্কিত অসুস্থতার উপসর্গসমূহ এবং জরুরি পদক্ষেপসমূহ সম্পর্কে কর্মীদের অবহিত করুন
- ডিনাট প্রাথমিক নিয়ম অনুসরণ করা



তিব্বি প্রাথমিক নিয়ম অনুসরণ করা হয়

পানি	ঠাণ্ডা ও পরিষ্কার পানি অবশ্যই পর্যাপ্ত পরিমাণে প্রদান করতে হবে
বাতাস ও ছায়া	- কর্মস্থলে এয়ার কন্ডিশনার ও ইভ্যপোরিটিভ ক্যাল স্প্রিং ও পরিচালনা করুন - ভীত তাপের সংস্পর্শে আসা কমিয়ে আনতে কর্মঘটন সমন্বয় করুন - ঘরের বাইরের কর্মস্থলগুলোতে অবশ্যই ছায়াযুক্ত স্থান (বিশ্রামের স্থান) প্রদান করতে হবে
বিশ্রাম	- তাপমাত্রা 31 ডিগ্রি সেলসিয়াস বা তার চেয়ে বেশি হলে যথাযথ বিশ্রামের প্রয়োজন হয় - তাপমাত্রা 33 ডিগ্রি সেলসিয়াস বা তার চেয়ে বেশি হলে কর্মীদেরকে অবশ্যই প্রতি 2 ঘণ্টা অন্তর কমপক্ষে 20 মিনিট বিশ্রাম নিতে হবে

তাপ সম্পর্কিত অসুস্থতার ব্যাপারে সচেতন হলে সোজাভাবে অবশ্যই পদক্ষেপ গ্রহণ করতে হবে



2025-শিল্পসুরক্ষা-000



참고3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조치사항



공통사항

- 집중호우·태풍 예비 특보 발령지역 사업장은 **재택근무 실시** 및 **휴가 적극 권고**
- 호우·태풍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 산안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호우·태풍 발생시부터 **기상특보 발령 상황 상시 모니터링**
*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기상특보 상황(날씨 > 기상특보 > 특보현황)

강풍

- ☑ 각종 시설물, 표지판, 자재 등 결속상태 점검
- ☑ 타워크레인 붐이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브레이크 해제(부러짐, 힘 방지)
- ☑ 강풍 시 철골조립, 양중작업 등 야외작업 중지

침수

- ☑ 배수로, 배수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
- ☑ 지하구조물 등 침수 우려 장소 작업 중지
- ☑ 침수된 장소에 인원 및 차량 출입통제 (감전, 질식 위험 확인)

붕괴

- ☑ 옹벽, 석축 등 붕괴 우려 장소 사전점검
- ☑ 방수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붕괴예방조치 실시
- ☑ 붕괴매몰 발생 우려 장소에 출입통제 및 통행금지
- ☑ 산사태 우려 지역은 사전 대비태세 유지 (비탈면 유실 여부 점검, 근로자 대피계획 수립 등)

감전

- ☑ 충전부 및 배전반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침수 우려 시 전기설비 이전 설치)
- ☑ 누전차단기 연결, 외함접지, 절연상태 점검 및 보수
- ☑ 침수 등 손상된 기계·설비 점검 시 사전 전원차단 조치


고용노동부

참고4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자율점검표





사업장명

소재지

점검자

점검일자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조치사항 및 개선계획
☑ 집중호우, 태풍 등에 따른 작업중지 등을 조치하고 있는가?		
☑ 호우·태풍 시 재난 위험장소(토사유실, 지반약화, 산사태 우려 등)가 있는지 사전 위험성평가 및 확인을 하였는가?		
☑ 강풍 시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없는가?		
☑ 호우 시 침수 위험은 없는가? (배수구 점검 실시)		
☑ 침수 시 전기 감전의 위험은 없는가?		
☑ 침수 시 오물 유입 등 위생상 문제되는 곳은 없는가?		
☑ 침수 대비 양수기 등 긴급 복구 장비는 갖추어져 있는가?		
☑ 정전 대비 비상구호 용품(손전등, 양초 등)이 구비되었는가?		
☑ 자연재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및 비상 복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는가?		
☑ 도급·수급 사업장이 합동 점검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위험 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을 논의하였는가?		
☑ 자연재난(산사태 포함)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는가?		
☑ 호우·태풍 발생 후 복구 시 조치사항 등이 정해져 있는가?		



대응요령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하고 대피



사업장 : _____
 대표자 : _____

점검자 : _____ (서명)
 대표자 : _____ (서명)